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6 선고 2024나499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6 선고 2024나49971 판결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4. 16 선고 2023가단12389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

피고, 항소인 B

변론 종결 2024. 10. 16.

판결 선고 2024. 11. 6.

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4. 16. 선고 2023가단123891 판결

주문

-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- 청구 취지

제1심 공동피고 A(이하 'A'라 한다)와 피고 B가 2023. 1. 9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B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. 1. 10. 접수 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제1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· 확정되었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 "보증금액 127,000,000원"을 "보증금액 127,500,000원"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3쪽의 바향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591,859,450원에서 선행 근저당권자 M조합의 피담보채권 540,000,000원을 공제한 51,859,450원(591,859,450원 - 540,000,000원), 밀양시 D 임야 시가 45,504,305원 합계 97,363,755원이고, 소극재산은 아래 표 개재와 같이 합계 308,905,829원으로 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C은행	127,500,000	원고의 보증부대출을 포함한 대출원금 갑 제7호증(부동산등기부등본)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	70,972,699	가압류권자
진흥공단	39,583,400	
경남신용보증재단	38,990,000	
C은행	23,766,337	
F	8,093,393	
합계	308,905,829	

○ 제1심 판결 이유 3. 나. 3)항(제1심 판결 이유 5쪽 18행부터 6쪽 8행까지)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가) 피고는 자신이 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, 공정증서(을 제4호증)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들어 A의 채무초과 상태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나)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다231163 판결,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).

다) 위 법리를 토대로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5호증, 을 제1,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행위가 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① 피고는 A의 아들 I이 대표이사이고 A가 사내이사인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

밀양시 N 공장용지 2,020m²에 2019. 12. 20.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20. 1. 13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.

② 피고와 A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날인 2020. 1. 13.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,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③ 위 공정증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미리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.

④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E조합의 선순위 근저당권 이외에는 A의 채무에 관한 기재가 없었으나, E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540,000,000원으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590,000,000원의 90%에 해당하는바, 피고로서는 A가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을 인지한 것을 넘어서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점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까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.

⑤ 피고는 수차례 A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A의 채권 채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금덕희

판사이상균

판사고종영

별지